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3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목포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19일 라.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4일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

o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의(2003. 12. 4) : 조성평 총무국장

나. 개정이유

- o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제공코자 초상화 그려주기, 가훈, 명언 써주기, 도자기 빚기 체험교실을 매주 토요일 갓바위해양유물전시관 옆에서 그림이 있는 거리를 운영중이나,
- o 한정된 프로그램으로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제 공이 미흡하여 우리시 대표적인 관광지인 유달산 이충무공 유적지 노적봉 주변에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그림이 있는 거리로 조성, 예향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예술활동의 장 ATR HILL(가칭)을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하며,
- o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중인 가건물은 보온 덮게 비닐하우스시설로 화재 및 강풍 등의 재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의 선별 수요가 급 증하고 있고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로 선별작업 환경이 열악하여 2003년 공 공재활용기반 시설확충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의거 선별장을 신축코자 하며,
- o 충무동 달리도 지역은 섬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노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달리1구에는 경로당이 없어 이곳 50여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달리1구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의 휴식공간을 마련,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건강·오락 등 노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골자

- o 노적봉 주변 휴게시설 및 ART HILL 조성 부지매입
 - ·매입대상 토지

재 산 의 표 시			기목	용 도	공 시 지 가		ょりる	비
동	지번	면적(m²)	시속	지 역	단가(원)	금액(천원)	소유주	고
계		2,097.5				400,629		
대의동2가	1-110	612.8	대	주거	187,000	114,594	대의동2가1 김일수	
"	1-130	645	대	주거	187,000	120,615	"	
"	1-82	839.7	대	주거	197,000	165,420	국(경찰청)	

·매입방법 : 협의매입

· 활용계획 : 문화예술의 장

· 시정조정 위원회 심의결과 : 원안가결(2003. 10. 28)

o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선별장 신축

• 신축시설현황

- 위치 : 목포시 대양동 산109-3, 109-4, 109-5

- 규모 : 1층 600 m² 작업장

- 구조 : 철근콘크리트, 경량철골조

·예산액 : 233,000천원(2003년도 본예산확보)

•활용계획 :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선별장

・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: 원안가결(2003. 10. 31)

·사업근거: 2003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국고보조 사업계획에 의함

- o 충무동 달리1구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
 - 현황
 - 달리도 등록경로당 : 1개소(달리2구 경로당)
 - 달리1구에 경로당 시설 전무하여 노인들의 쉼터 부족
 - 추진계획

- 사업명 : 충무동 달리1구 경로당 신축

- 위 치 : 달동 554-16번지

- 사업규모 및 사업비 (단위 : 천원)

동	별	계획년도	설치장소	규	足	소 요 예 산	비고
충무	-동	2003년	달동 554-16	·대지 330 ·건물 99m	` /	·사업비 120,000 - 부지 3,000 - 건축 117,000	

- ·예상사업비 : 120,000천원(부지매입3,000, 건축비 117,000)
- · 활용계획 : 달리1구 경로당
- ㆍ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: 원안가결(2003. 11. 15)
- 기대효과
- 노인들의 편리한 휴식공간 및 여가시설 제공
-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충으로 복지증진에 기여
- 3. 질의 및 답변요지
 - "생략"
- 4. 위원회 활동
 - 가.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의(2003. 12. 4)
 - o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답변
 - 나.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의(2003. 12. 8)
 - o 의견개진 및 심사의결
- 5. 토론요지 및 지적사항
 - o 노적봉 주변 휴게시설 및 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매입건은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한 상태이나, 우선 매입하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수립하기바람.
- 6. 심사결과 : 【원안가결】